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  
2021. 4. 22.(목)

자료문의 : 형사정책담당관실  
전화번호 : 02-3480-2922  
주책임자 : 형사정책담당관

## 제 목 2021년 1분기(1월~3월)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

-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사경의 ‘순 송치·송부 건수’는 전년 동기 대비 78.1% 수준으로 감소
  - 사경의 순 송치·송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.7%(1월 누계) ⇒ 65.7%(2월 누계) ⇒ 78.1%(3월 누계)로 점차 회복 추세
  - 같은 기간 검찰이 송치 받아 기소한 사건도 전년 대비 73.6%로 감소
  - ※ 순 송치·송부 건수 : (송치+불송치+수사중지)-보완수사 후 송치-이의신청 송치
-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  - 순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2,923건(1월) ⇒ 5,206건(2월) ⇒ 6,839건(3월)
  - ※ 3월까지 누계 기준, 순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1.3%
  - 검토완료 불송치기록 중 재수사요청 건수는 559건(1월) ⇒ 916건(2월) ⇒ 1,377건(3월)
  - ※ 3월까지 누계 기준, 검토완료 불송치기록 대비 재수사요청 비율은 4.5%
  - 검토완료 수사중지기록 중 시정조치요구 건수는 904건(3월까지 누계)
  - ※ 3월까지 누계 기준, 검토완료 수사중지기록 대비 시정조치요구 비율은 4.7%
-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·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검·경의 업무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한편, 시행 초기 검·경간 다소간의 혼선도 발생하고 있으나,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는 중
  -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개선 필요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후속조치도 추진 예정

## 1 3개월간 운영 결과 분석

### 가. 송치, 송부 건수 감소

-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경찰에서 송치·송부된 사건(보완 수사 후 재송치사건, 이의신청 송치사건 제외, 수사중지기록 포함)은 전년 동기 대비 78.1%(290,874건⇒227,241건)로 감소

구 분	1월 누계	2월 누계	3월 누계
2020년 송치	102,924건	195,321건	290,874건
2021년 송치·송부	60,410건	128,399건	227,241건
전년 동기 대비	58.7%	65.7%	78.1%

※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1월 누계 기준 2020년의 58.7% 수준이었으나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

- 송치사건과 불송치기록만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송치 사건은 16.9%, 불송치기록은 18.2% 각각 감소하여 불송치기록(불기소의견)의 감소 폭이 더 큼

구 분	건 수	구 분	건 수
2020년 기소의견 송치	158,896	2020년 불기소의견 송치	91,850
2021년 송치	132,003	2021년 불송치	75,094
<b>증감 비교</b>	<b>16.9% 감소</b>	<b>증감 비교</b>	<b>18.2% 감소</b>

### 나. 송치사건 처리 감소

- 최근 3년(2018~2020년) 기준, 검찰은 매년 1/4분기에 송치된 사건 중 약 9만 건의 사건을 1/4분기에 기소
- 개정법 시행 후 1월~3월 기간 동안 수리된 사경 송치사건 중 기소 건수는 약 6.5만 건으로 감소(전년 대비 73.6%)

<연도별 1/4분기 사경 송치사건 기소 건수 증감>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기소건수	99,140건	87,067건	89,087건	65,534건
전년대비	-	87.8%	102.3%	73.6%

※ 사경의 송치·송부 사건 대비 기소율(27.2%)은 전년도(28.9%)와 유사  
 ⇒ 결국, 사경 송치사건 감소가 기소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

**② 처리 유형별 현황 [2021. 1.~3.]**

**가. 보완수사요구 관련**

- 사경 순 송치사건 수 대비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비율은 11.3%로  
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

구분	1월 말일 누계 기준	2월 말일 누계 기준	3월 말일 누계 기준
사경 순 송치사건 수 ( <u>송치일자</u> 기준)	35,682건	74,818건	132,003건
보완수사요구(결정)	2,869건	7,995건	14,729건
보완수사요구(추완)	54건	134건	239건
<b>보완수사요구 비율</b>	<b>약 8.2%</b>	<b>약 10.9%</b>	<b>약 11.3%</b>

- 월별 보완수사요구 건수도 2,923건(1월) ⇒ 5,206건(2월) ⇒  
 6,839건(3월)으로 지속적으로 증가
- 전체 사경송치 사건(특사경 송치사건은 제외) 중 기소의견은  
90.5%,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는 1.5%, 보완수사 후 송치는  
7.8% 각각 차지

구분	사경송치					특사경 송치	합계
	일반 (기소의견)	이의신청 송치	보완수사 후 송치	송치요구	기타 (재정신청등)		
건수	131,935	2,237	11,449	6	62	17,927	163,616

※ 사경송치 사건 중 ① 보완수사 이행 후 재송치 사건, ② 이의신청 송치 사건을 제외한 ‘사경 순 송치 사건 수’는 132,003건으로, 전년 동기 기소의견 송치 건수(158,896건) 대비 약 16.9% 감소

#### 나. 재수사요청 관련

- 재수사요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기록 중 약 4.5%에 해당하고 월별 재수사요청 건수는 559건(1월) ⇒ 916건(2월) ⇒ 1,377건(3월)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(검토완료 기록 기준)

구분	1월 말일 누계 기준	2월 말일 누계 기준	3월 말일 누계 기준
사경 불송치기록 수	18,545건	41,098건	75,094건
검토완료 건수	14,305건 (검토완료율 77.1%)	31,702건 (검토완료율 77.1%)	64,047건 (검토완료율 85.3%)
재수사요청 건수	559건	1,475건	2,852건
재수사요청 비율	약 3.9%	약 4.7%	약 4.5%

- 불송치기록 송부 건수는 75,094건으로 전년 동기(불기소 의견 송치 건수 91,850건)에 비해 18.2% 감소

#### 다. 시정사건 관련

- 검토완료 된 수사중지기록 중 법령위반,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요구한 사건은 3월 말 누계 기준 904건으로 전체 수사 중지기록의 4.74%

구 분	수사중지기록 접수 건수	검토완료 건수	검토 후 반환	시정조치요구
건 수	20,144	19,077	18,173	904
비 율	-	100.00%	95.25%	4.74%

- 수사중지기록을 제외한 사건 또는 기록과 관련하여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

### 3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현황 변화

#### 가. 고소·고발 사건 감소

- 1/4분기 기준 검찰에 접수된 고소·고발사건은 7,695건으로 전년 동기(24,447건) 대비 68.5% 감소
- 고소·고발 사건 감소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

구 분		검사실 직접수사	수사조사과 지휘	특사경 지휘	사경지휘 (‘21: 사경이송)	합계
2020	건수	3,149건	1,279건	122건	19,897건	24,447건
	비율	12.9%	5.2%	0.5%	81.4%	100.0%
2021	건수	1,220건	481건	30건	5,964건	7,695건
	비율	15.9%	6.3%	0.4%	77.5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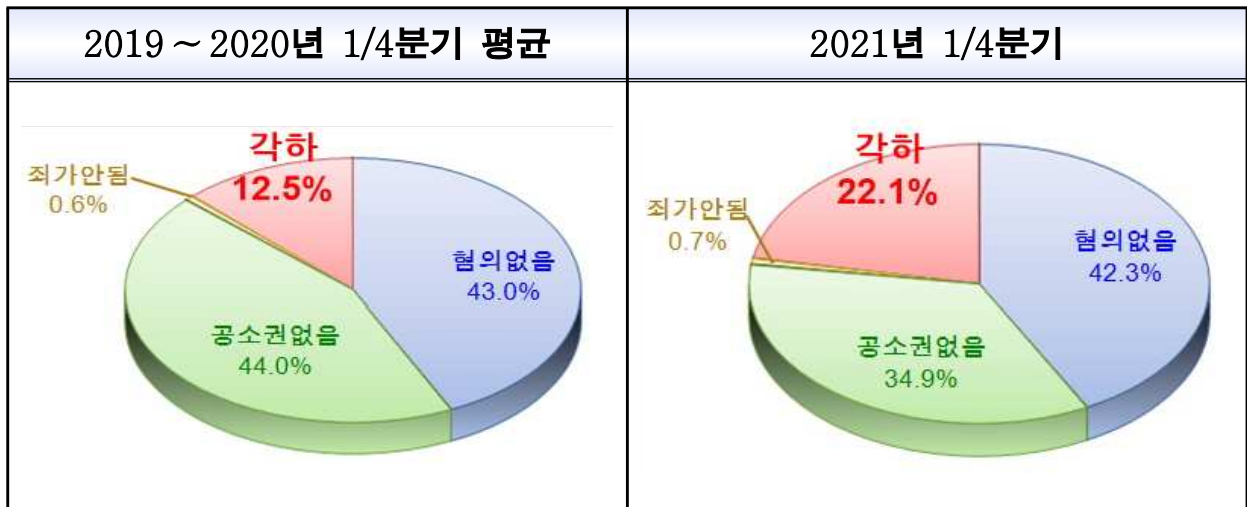
※ 2021년 ‘검사실 직접수사’ 항목에는 3월 말 기준으로 직접수사 또는 이송(지휘 포함)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 포함

#### 나. 불송치 송부 기록 유형별 현황

- 예년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 수에 비해 개정법 시행 이후 불송치 송부 기록 건수가 감소하였고 ‘각하’ 주문의 비율은 증가(12.5% ⇒22.1%)하고 ‘공소권없음’ 주문 비율은 감소(44.0% ⇒34.9%)

<불송치기록 주문 및 불기소 의견(건수/비율)>

구 분	개정법 시행 전 (’19년, ’20년 각 1/4분기 평균)	개정법 시행 후
혐의없음	61,832건 (43.0%)	52,324건 (42.3%)
공소권없음	63,275건 (44.0%)	43,157건 (34.9%)
죄가안됨	836건 (0.6%)	889건 (0.7%)
각 하	17,941건 (12.5%)	27,291건 (22.1%)
합 계	143,884건	123,661건



#### 4 주요 사법통제 유형

##### 보완수사요구

○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요구

※ [주요 유형] ▲ 주요 구성요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경우, ▲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, ▲ 허위 자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하여 보강증거 수입이 미흡한 사례 등

## 재수사요청

-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경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재수사요청
- ※ [주요 유형] ▲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사례, ▲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합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한 사례, ▲ 계좌거래내역, 현장 CCTV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등

## 시정조치요구

-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경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요구
- ※ [주요 유형] ▲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이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, ▲ 수사기록 일부를 누락시키고 기록을 조제한 사례, ▲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체포시한을 넘겨서 석방한 사례 등

### 5] 향후 계획 및 후속조치 필요사항

#### 가. 검·경 협력을 통한 제도 안착 노력 지속

-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개편으로 검·경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나, 검·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 조율
- 향후,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

#### 나. 추가 후속조치 만전

- 개정 형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후속조치 추진 예정 ☐